시즌권 양도/양수 신청서

1. 구 입 처 : 홈페이지 당사방문 (기타 :)

2. 구매 금액 :

3. 권 종 : 전일권

4. 양도인 및 양수인 정보 입력

양 도 인	* 사용자명	(서명/인)		
	* 생년월일	년 월 일 (반드시 신분증 상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	*성 별	남( ) 여( )
	* 이메일			
	* 휴대전화번호			

양 수 인	* 사용자명	(서명/인)		
	* 생년월일	년 월 일 (반드시 신분증 상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	*성 별	남( ) 여( )
	* 이메일			
	* 휴대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지산리조트 시즌권 이용약관에 따라 양도/양수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 유의사항

▶ 구비서류 : 시즌권 양도/양수 신청서, 양도 및 양수자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 양도양수 수수료는 4만원 입니다.(공정거래 위원회 표준)

▶ 양도양수가능기간은 개장일기준 전일권 60일 입니다.

▶ 반드시 양도,양수인 친필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함.

▶ 수령된 시즌권은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위임장은 양도인의 날인(도장)이 찍힌 원본을 원칙으로 합니다.

양도는 최초 당사 구입자 1회에 한하므로 양수인은 추후 양도하지 못합니다.
양도인 및 양수인은 연차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사용 적발시 약관에 따라 시즌권 정지 및 해당 시즌권종의 정상요금 벌과금 부과.

제5조 (시즌권 부정사용 및 분실신고)

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시즌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구매자) 또는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시즌권을 분실 하거나 도난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당사 시즌권 담당처에 지체없이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 신고 이전에 부정 사용으로 인하여 회수된 시즌권은 회수, 말소(폐기) 처리 됩니다.

다. 기타 부정하게 사용되다 적발된 시즌권은 회수 및 폐기 처리될 뿐만 아니라 벌과금이 부과 됩니다.

라. 관련법률

1)도난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한 경우 형법 제 329조와 형법 제 360조에 의거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2)발급받은 시즌권의 위,변조 행위를 제공하거나, 위,변조된 시즌권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 217조에 의거 유가증권 위조등에 저촉되며, 적발된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어, 민.형사상의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3)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시즌권)등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6조 (시즌권 부정사용시 처벌 규정)

가. 시즌권 구입자가 제 3자에게 당해 시즌권을 약관상 정상적인 양도양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그 제 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시
1)시즌권 폐기
2)이용자(부정사용자) - 이용한 해당 시즌권종의 정상요금 벌과금 부과

나. 제 3자가 분실, 절취, 횡령, 강취, 사취 등을 통해 습득한 시즌권을 이용한 행위
1)시즌권 폐기
2)시즌권 구입자(기명인) - 분실, 도난 신고후 제 3자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나, 신고전에 제 3자가 이용하다가 적발 되었다면 미신고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시즌권 폐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이용자(부정사용자) - 이용한 해당 시즌권종의 정상요금 벌과금 부과, 시즌권 구입자와 합의

다. 시즌권의 재발급 받은후 기존 시즌권 사용시 부정사용으로 적발되면 신/구 시즌권 모두 회수,말소 처리 됩니다.

라. 시즌권 위, 변조 적발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

마. 위 처벌 규정에 대해 손해 배상을 인정 하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인계

20 년 월 일

양도인 (서명/인)

20 년 월 일

양수인 (서명/인)